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주요내용 설명

목 차

1. 지식재산권의 정의

2.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주요 내용

- 승계의 절차
- 제3자와의 공동특허
- 보상금의 확대

3. 향후 계획

지식재산권이란?

정의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

종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공단 보호권리

- 발명 중 “직무발명”
- 자유발명 중 공단이 “승계한” 지식재산권

관련법령

-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유출 등

시설물 관리의 기술 개발 등을 하는 A회사에 재직중인 김과장은 시설관리의 중요기술을 개발함. 김과장은 해당 중요기술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여, 해당 기술을 A회사에 보고하지 않기로 함. 김과장은 또다른 시설관리 개발업체인 B회사와 비밀리에 실용화하기로 하고, 사업이 정착되면 A회사를 퇴직하고 B회사에 취업하기로 하였음.

어느날 김과장에게 검찰에서 전화가 오는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지방공기업법)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유출 등

영업비밀의 의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 침해행위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각호)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제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유출 등

영업비밀 및 자료반출과 업무상 배임죄

회사직원이 ……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8.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유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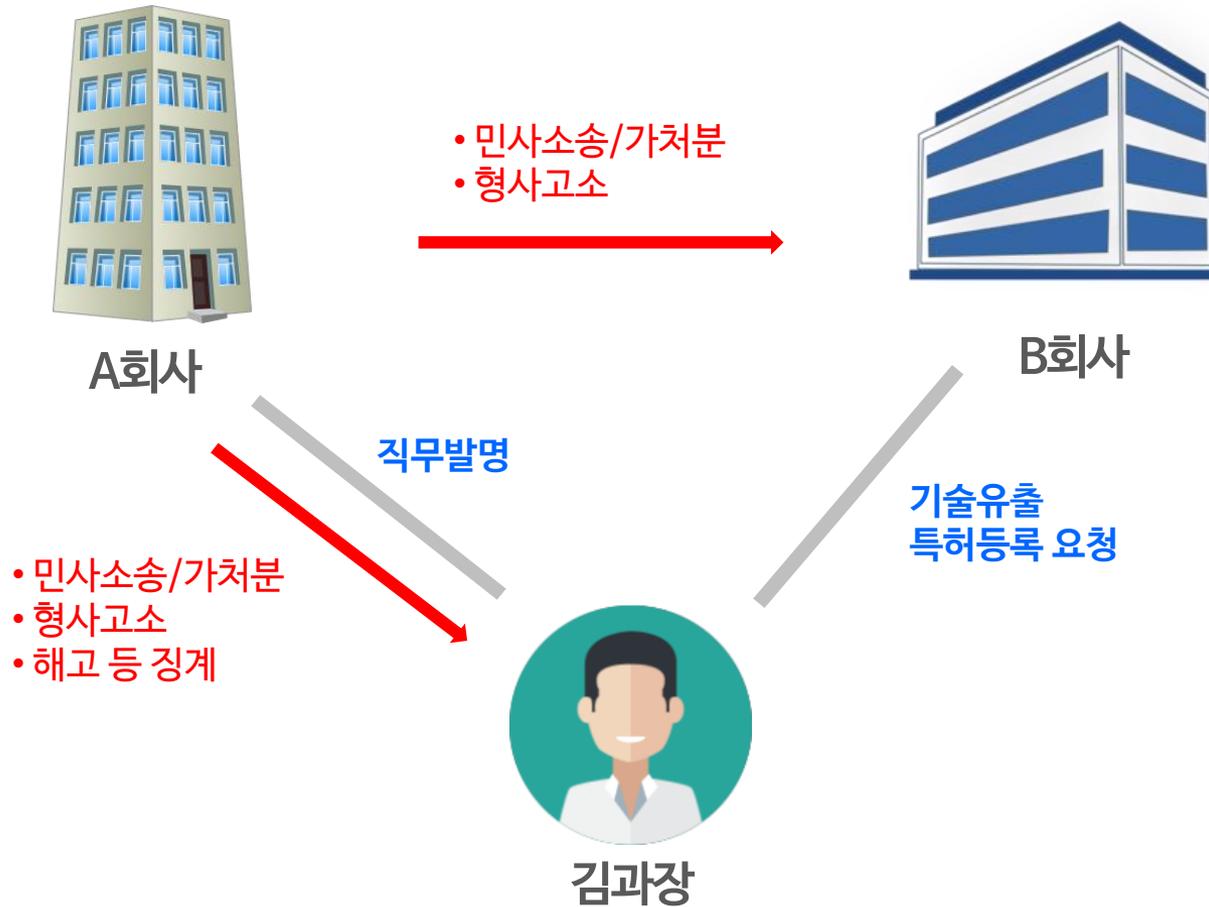
직무발명과 업무상 배임죄 등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에 승계시킨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로 위 약정 등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위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종업원 등이 이러한 신임관계에 의한 협력의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대법원2014.11.13.선고2011다77313,77320판결)

종업원 등이 임무를 위반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2012.11.15.선고2012도6676판결 등)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유출 등



지식재산권 관리규정(단독출원)

단독발명의 신고 및 승계

- 직무발명을 한 직원은 즉시 소속부서장에 그 내용을 신고하고, 소속부서장은 운영부서장(발명을 공단에서 활용하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 주관부서장에게 승계 요청
- 주관부서장은 지식재산권 주관부서 본부장의 승인 하에 승계 여부 결정 (필요시,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개최)

단독발명시



지식재산권 관리규정(공동출원)

제3자와의 공동발명

- 운영부서장은 제3자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개발, 취득, 승계, 사용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요청**하여야 함.
- 운영부서장은 사전 심의 요청시, 제3자의 정보 및 계약서(안) 등을 제출

공동발명시





제3자와 공동발명 등을 추진할 경우의 유의사항

공동발명 착수전 사전심의 요청
(운영부서장)



공동발명 추진 승인여부 심의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서에 따른
발명 · 출원 · 등록 등 실시



계약서상 권리 · 의무 불이행시
각종 조치 시행



공단의 권리 보호, 비위행위 차단 등을 위한 투명한 절차 체계 확립

보상의 범위 확대

- 보상은 등록보상, 출원유보보상, 처분보상, 방어보상 등으로 확대함.

● 신·구문 대비

보상의 종류	기존 규정	신규 규정	비고
등록보상금	○	○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
출원유보보상금	X	○	등록보상금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처분보상금	X (이사장 방침으로 지급)	○	공단수입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
방어보상금	X	○	특허권, 실용신안권 20만원 디자인권, 기타 권리 10만원

※ 단,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감액 또는 미지급 결정할 수 있음.

향후 계획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공포 · 시행

- 이사회 부의 및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공포 및 시행(7월 중)
- 창의활동운영및보상에관한규정 등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일제 정비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개최 등 후속조치

- 기존 지식재산권 중 계약서 등이 미흡한 공동발명에 대한 조치 요구
-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활용실적, 판매실적 등이 없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기 조치 실시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교육

- 직무발명 절차 등의 교육으로 비위행위 등 문제점 사전 차단
- 보상절차 등의 교육으로 직원의 발명 의욕 고취

감사합니다
